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폭염, 한파에 대응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명시〉
■ 차규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936호)

2025.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폭염, 한파에 대응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명시	2

I. 제안경위

2025년 8월 1일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5년 8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이나 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중지 사유에 폭염·한파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추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사유에 폭염·한파로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작업중지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폭염·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

Ⅲ. 검토의견

1.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건에 “폭염, 한파, 태풍 등 기상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를 명시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폭염·한파로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판단에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작업중지로 발생한 임금 감소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2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u>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u>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등) ① ----- <u>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협이 있거나 폭염·한파로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u>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주는 <u>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협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u>	④ ----- <u>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협이 있거나 폭염·한파로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u>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우려가 있다고 근로자가 판단할 만한----- ----- ----- -----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작업중지로 발생하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대피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로¹⁾ 규정되어 있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 1)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이례적이었던 폭염, 한파 등이 계절에 따라 일상적인 현상이 되어가면서 근로 환경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열악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은 그 요건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라고만 규정되어 극심한 폭염·한파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개정안은 근로자의 작업중지의 요건으로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작업중지권 행사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근로자를 보호하며, 작업중지로 인한 근로자 임금 감소분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함으로써 폭염과 한파 등의 위험상황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중지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사업주의 재정적인 부담도 경감하여 작업중지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상여건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 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산업재해의 정의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개정안의 내용이 현행법의 작업중지 요건인 “산

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일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특별히 기상요건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할 필요성 등 개정의 실익 여부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현행법의 ‘급박한 위험’은 현행법 제38조의 안전조치 및 제39조의 보건조치 사항 등과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위험²⁾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개정안의 ‘폭염·한파로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현행법상 안전·보건조치의 일부 대상이므로 해당 내용만 법률에 열거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치 않고,

오히려 개정안의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라는 요건은 ‘급박한 위험’보다 추상적이고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5

2) 7.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